

의안 번호	1326
----------	------

# 울산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연월일 : 2017. 3. 8. (수)
- 나. 제 출 자 : 이효상의 7명
- 다. 위원회회부 : 2017. 3. 10.(금)
- 라. 위원회심사 : 2017. 3. 17.(금)

## 2. 제정이유

○ 근로자들의 경제·사회활동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,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켜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일터에서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~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4조)
- 다. 노동인권 보호 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5조)
- 라.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6조)
- 마. 공공기관의 이행사항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7조)
- 바.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추진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8조)

사. 지킴이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9조)

아. 노동인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~제14조)

#### 4. 근거법규

- 근로복지기본법

#### 5. 검토의견

- 「대한민국헌법」, 노동관계법령에서 보장한 울산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경제·사회활동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 < 관계 법령 >

### □ 근로복지기본법

#### 제3조 (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)

- ① 근로복지(임금·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정책은 근로자의 경제·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,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.
- ② 근로복지정책을 수립·시행할 때에는 근로자가 성별, 나이, 신체적 조건, 고용형태,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
- ③ 이 법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중소기업 근로자, 기간제근로자(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), 단시간근로자(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), 파견근로자(「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, 하수급인(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)이 고용하는 근로자, 저소득근로자 및 장기근속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#### 제4조 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·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·기금·세제·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

#### 제7조 (재원의 조성 등)

-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근로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(財源)의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재원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출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